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법 제10조)

누가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어떻게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적합 재 확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은 3년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챔프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30일이 경과한 확인결과서는 챔프신고 불가하며,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사항 준수 (법 제10조)

누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
어떻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기준에 맞는 사항을 표시해야 함

-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하 챔프)에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함
▶ 신고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챔프를 통하여 변경신고 완료 후 판매 또는 유통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

※ 세부내용은 환경부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참고

<표시사항>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중량·용량·매수, 어는점, 액성, 표준사용량, 효과·효능, 제조자·주소·연락처, 판매자·주소·연락처,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수입자·주소·연락처, 어린이보호포장대상·비대상제품의 표시,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신호어 및 그림문자,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안전기준확인마크,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표시방법>

- 한글 표기 원칙(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보다 작게 표시)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표시
-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 표시방법 권장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병행 표시
 - 그림기호표시(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
 - 별도 첨부문서 동봉시 안내문 표시 (예시: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십시오)
 - 살균·소독제품, 구제제품, 보전제품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캐릭터 표시 자제

표시 위치

-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도안 예시 참고)
-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 그 용기도 포함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0000

품목: 용도: 제조연월: 어는점: 액성: 제조자, 주소, 연락처: 판매자, 주소, 연락처: 제조국명, 제조회사: 수입자, 주소, 연락처: 사용 물질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 기타물질: 사용방법 ① 사용상 주의사항 ① 응급처치 ①	제품명: 제형: 유통기한: 중량·용량·매수: 표준사용량: 신호어 그림문자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0000

품목:
 제품명:
 주요물질:
 제조자, 연락처:
 수입자, 연락처:

〈표시면적 50~100cm²인 제품〉

품목:
 제품명:
 신고(승인)번호: 0000

〈표시면적 50cm²이하인 제품〉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 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미준수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문구 이런 표현은 사용하면 안돼요!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무독성, 독성없음(Non-Toxic,
Toxic Zero)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환경·자연친화적, 천연·그린·에코·
자연주의, 환경을 생각, 자연유래·추출
순수(Pure), 순(純)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
으로 인식해 오·남용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무해성, 안심·착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유해물질 없음, 아이에게 안전·아이보호

**인체·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인체·동물친화적,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고 (법 제49조)

누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어떻게	기록 및 보고 의무
(보존기간) 10년 (기록사항) 보고년도의 3월 31일 ①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보고기간) 2년마다(짝수년도) (보고기한) 보고년도의 3월 31일 (제출처) 관할 유역환경청장 (보고사항) ①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중점 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록 및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 자료 미보고 및 거짓 보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22-21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분류	품목
제1부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제2부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제3부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제4부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제5부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제6부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제9부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제11부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제12부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제14부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